

인천지방법원 2020. 6. 24 선고 2019가단18579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등]

전 문

원고A

피고1. 주식회사 B

2. 대한민국

변론 종결2020. 5. 27.

판결 선고2020. 6. 24.

주 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2002. 12. 17. 접수 제5935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은 위 가.항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C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B')와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C 아버지)는 C의 피고 B에 대한 대리점계약상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2. 12. 13. 피고 B와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7.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

다. C은 피고 B와 위 대리점계약을 해지하고 2014. 7.경 거래를 종료하였다.

라. 피고 B가 국세를 체납하자 피고 대한민국은 2019. 2. 7. 피고 B의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하였고, 같은 달 13.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부기등기 방식으로 압류등기가 마쳐졌다.

[인정 근거]○ 피고 B: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 피고 대한민국: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1~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련 법리

근저당권은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이후 부종성을 가지게 되어 보통의 저당권과 같은 취급을 받으므로(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다25521 판결 등 참조), 피담보채권이 확정된 이후 시효의 완성 기타 사유로 소멸한 때에 근저당권도 소멸한다(민법 제369조 참조).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C과 피고 B는 2014. 7.경 대리점계약에 따른 거래를 종료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피고 B의 C에 대한 대리점계약상 채권(이하 '대리점채권')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는 그 후 C이 대리점채권을 모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는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에 따라 피고 B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피담보채권인 대리점채권이 확정된 이후 변제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도 이미 소멸하였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C이 피고 B와 거래 종료 후 대리점채권을 모두 변제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부합하는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는 믿을 수 없고, 달리 위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2014. 7.경 대리점계약에 따른 거래가 종료하였으므로 대리점채권은 그때까지 발생하고 확정되었다. 대리점채권에 관하여 이행기 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행기의 정함이 없는 채권에 해당하므로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채권이 발생한 때로 보아야 한다. 대리점채권은 상행위로 인한 것으로서 상법 제64조에 따라 5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대리점채권 최종 발생일인 2014. 7.로부터 5년이 경과한 사실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대리점채권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피담보채권인 대리점채권이 확정된 이후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도 함께 소멸하였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을 압류하여 등기부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봉지수

별지